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 및”을 “제15조제1항제1호 및”으로, “제15조제1항의”를 “제15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조제1항제4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1. 합병

- 가.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 나.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 다. 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2. 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 중 “(제15조제1항제4호 관련)”을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합병”을 “추가출자시 합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합병”을 “추가출자시 합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추가출자금”을 “추가출자시 추가출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 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p> <p><u>1.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u></p>	<p>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 기준) ① ----- ----- ----- ----- -----.</p> <p><u>1. 합병</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u></p>

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2. 합병 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2. 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합병 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4.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삭 제>

② 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

② -----

제15조제1항제1호 및 -----

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의 -----
----- . -----
----- 제15조제1항제1호
라목-----
-----.

[별표4]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구 분	요 건
1.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금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감독장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이하 “소속 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단, 부채비율 산정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 법인등인 경우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당해 법인 및 당해법인 소속 계열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3.주요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가. 추가출자시 추가출자금 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주요출자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등인 경우	가. 주요출자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비고 :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은 최직근 사업년도말 또는 반기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감자·자기주식 취득 등에 의한 자기자본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기업집단등의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함